



즉시 배포용: 2023년 12월 27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 주민들에게 최저 임금 인상 예정 재공지

1월 1일부터 뉴욕의 최저임금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에서 시간당 16 달러, 뉴욕주 기타 지역에서 시간당 15 달러로 인상

2027년까지 뉴욕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이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는 역사적 다개년 계획의 일환

가정 돌봄에 대한 최저임금 역시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에서 시간당 18.55 달러, 뉴욕주 기타 지역에서 시간당 17.55 달러로 인상

임금에 최저임금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최저임금 근로자는 뉴욕주 노동부의 웹사이트 [여기](#)에서 신고 및 불만 접수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에게 뉴욕주 최저임금인 2024년 1월 1일자로 인상됨을 다시 알렸습니다. 이는 최저 임금을 인상한 후 이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는 역사적인 다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Hochul 주지사와 뉴욕주 의회의 합의에 따라 뉴욕의 최저임금은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 롱아일랜드에서 시간당 16 달러, 그 외 지역에서 시간당 15 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가정 돌봄에 대한 최저임금 역시](#)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 롱아일랜드에서 시간당 18.55 달러, 업스테이트 뉴욕 카운티에서 시간당 17.55 달러로 인상됩니다. 뉴욕의 최저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맞추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뉴욕주 전역의 수십만 명의 최저 임금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역사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뉴욕 주민들은 계속 되는 물가 인상 기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임금에 최저임금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최저임금 근로자는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 신고 및 불만을 접수해야 합니다."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에 맞춰 생계를 이어가려는 뉴욕 주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지속적으로 다년간 인상을 지속함으로써

기업들이 꾸준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자신과 가족을 더 잘 부양할 수 있게 됩니다."

회계연도 2024 예산의 일환으로 Hochul 주지사는 2026년까지 뉴욕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하고 2027년부터 인플레이션 인덱스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역사적인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초기 상향 조정 이후, 최저임금은 2025과 2026년에 0.05 달러씩 올라갑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북동부 지역의 임금 및 사무직 근로자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for Urban Wage Earners and Clerical Workers, CPI-W)에 의해 결정되는 비율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해당 지수는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최선의 기준 중 하나입니다. 특정 경제 또는 예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off-ramp)"를 허용됩니다.

향후 3년에 걸친 최저임금 인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시행일	뉴욕시,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이외 뉴욕주 지역
현행 최저임금	15 달러/시간	14.20 달러/시간
2024년 1월 1일	16 달러/시간	15 달러/시간
2025년 1월 1일	16.50 달러/시간	15.50 달러/시간
2026년 1월 1일	17 달러/시간	16 달러/시간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에 맞게 지수화하는 것은 근로자 임금의 구매력을 매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겠지만, 특히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불균형한 몫을 차지하는 여성들과 유색인종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입니다.

2023년 최저 임금이 15달러 이상인 3개 주를 포함하여 다른 18개 주에서 현재 최저 임금을 인플레이션이나 다른 경제 공식과 연계하거나 연계할 예정입니다. 경제 연구에 따르면 최저 임금 인상은 빈곤 감소, 사회 지원 지출 감소, 자극적인 지출, 근로자 생산성 향상 및 기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NYSDOL)는 뉴욕 주민에게 최저임금 상향 조정에 따라 알리고 최저임금 노동자가 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하도록 공공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소셜미디어, 뉴스레터, 이메일 소통 등을 통한 디지털 홍보를 비롯해 파트너 단체와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는 직접 홍보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임금에 최저임금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최저임금 근로자는 뉴욕주 노동부의 [웹사이트](#)를 통하거나 833-910-4378번으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 상향 조정 집행에 대한 NYSDOL의 노력은 노동부 [시작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